

『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』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9. 10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1. 대상업체 : 붙임 참조
- 2. 공고기간 : 2024. 9. 10. ~ 2024. 10. 28.
- 3. 청 문 일 : 2024. 10. 28.(월) 14:00 서구청 도로과 4층
- 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5. 공시송달업체

업체명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근거	처분내용 (청문)
(주)알티이엔씨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송파-15-09-02)	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1번길 76 201호 (석남동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등록말소 청문일시 : 2024. 10. 28.(월) 14시 - 청문장소 : 인천 서구청 도로과
		변경된 법인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, 4층(운천동)		
(주)피피테크	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(계양2020-10-03)	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70 706-1호 (원당동, 새샘프라자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
		변경된 법인주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양오길 142		
(주)건화토건	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(해운대2014-02-02)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 (부산해운대2015-11-02)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11 504호 (청라동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

6. 기타사항

- 가.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(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)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·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나. 귀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(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)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진술서(청문)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미 제출 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의 관련 조항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☎032-560-4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